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4(인증 대상 식품)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”이란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(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,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함)를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에 시행한다.

제2조(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수입되어야 하는 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선적(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)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.

1. 2019년 수입량이 10,000톤 이상인 경우 : 2021년 10월 1일
2. 2020년 수입량이 5,000톤 이상인 경우 : 2022년 10월 1일
3. 2021년 수입량이 1,000톤 이상인 경우 : 2023년 10월 1일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: 2024년 10월

1일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수입식품정책과	
연 락 처	043-719-2162